

행정기관부여 동의양식번호	홍은동 410-4번지 일대 제 1 호
번호부여일자	2025. 4. 18.
확인(인)	서대문구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서

1. 소유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현주소		전화번호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 (㎡)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하나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때 대표자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표기하고,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첨부

※ 주의사항

- 동의하는 자는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 동의서를 재작성하도록 하거나 자필로 수정하고 날인하여야 함
- 동의하는 자는 하나의 추진주체(동의를 받는 자)에게만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2. 구역개요

위 치 (요청 구역)	홍은동 410-4번지 일대	구역면적	58,987(㎡)
----------------	----------------	------	-----------

3. 동의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동의함
나. 본인은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 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동의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 아래의 동의여부 표기 시 각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의제된다는 사항

※ ①과 ②는 둘 중에 한 곳에만 동의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의제사항		자필로 동의 기재 <①, ② 중 한 곳만 표기>
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서명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 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의제됨	동의
② 조합직접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생략)	※조합직접설립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 하고 공공지원으로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및 창립총회 준비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됨 ※구역지정 전에 조합직접설립에 대해 과반수 동의 미충족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추진하거나,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조합직접설립에 과반수 동의가 확인(충족)될 경우 조합직접설립으로 추진 가능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는 별도 징구함	동의
2. 본 동의서의 효력은 각 동의의 관련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동의를 철회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인정된다는 사항 ※ (예시) 입안 요청 동의서 제출 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 전 철회한 경우, 입안 요청에 대한 동의까지는 인정됨 3.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의의 철회 및 반대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사항 -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청장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구청장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함		
상기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36조의3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자필로 동의를 기재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자필서명 (지장날인) ※ 토지등소유자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서명)하고, 반드시 지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함(인감, 기타 인장은 불인정) 서대문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분증명서 사본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소유자별 각 1부). 3.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1부(공동소유일 경우). *공유자 모두 동의서 제출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각 자치구,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수시 모집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해당 자치구 구역 담당)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기관명 : 신청구역 관할 자치구 및 서울시 관련부서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市 소관부서)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관계자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주민 협의·안내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관련
* [문의전화]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부서)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재정비촉진과, 주거환경개선과 등 市 소관부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비구역 지정까지 [단, 최대 후보지 선정 후 2년까지]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약사항
 -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후보지 신청 관련 검토 및 사업추진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 지	소 재 지 (공유여부)	면 적(m ²)
		(계 필지)	(계)
		()	
		()	
	건축물	소 재 지 (허가유무)	동 수
		()	
		()	
		()	

상기 물건에 대한 아래 공동소유자(위임자)는 「신속통합기획 등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 관련 신청구역의 범위(구역계)를 확인하였으며, _____을(를) 대표소유자로 선임하여 후보지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물건	연번	성명 (자필서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전화번호	지장날인
대표소유자 (선임수락자)	-				
위임자 (동의자)	1				
	2				
	3				
	4				
	5				

※ 자필서명이란 성명을 본인이 직접 정자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자필서명과 지장날인 모두 해야 유효함